

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9. 25.] [총리령 제1639호, 2020. 8. 24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류 및 식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류 및 식초의 소분·판매를 허용하고,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의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,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

제정·개정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◎총리령 제1639호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8월 24일

국무총리 (인)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·판매해서는 안 된다.

제3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어육 제품
2. 특수용도식품(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)
3. 통·병조림 제품
4. 레토르트식품

5. 전분

6. 장류 및 식초(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

제50조제4호 중 "성병"을 "성매개감염병"으로 한다.

제52조제4항제1호 중 "허가관청·신고관청·등록관청과 같은"을 "영업소가 속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"로 한다.

별표 20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"제1호사목"을 "제1호아목"으로 한다.

별표 23 II.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10호가목3) 중 "제7호타목2)·7)·거목"을 "제7호타목2), 같은 호 거목"으로 하고, 같은 목에 1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) 별표 17 제7호타목7)을 위반한 경우	영업정지 2 개월	영업정지 3 개월	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23 III.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3호다목 중 "제10호가목1)"을 "제10호가목1) 및 11)"로 한다.

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"처리기관(담당부서)"을 "처리기관"으로, "식품의약품안전처(영양안전정책과)"를 "식품의약품안전처"로 한다.

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"식품의약품안전처(영양안전정책과)"를 "식품의약품안전처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받은 식품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